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5. 1. 13.(월)	위원정수	9	참석인원	7
회의일시	2025. 1. 22.(수) 11:00	회의장소	대학본부 겸 학술정보관 3층 하나홀		
참석위원	정사언, 배장은, 홍사욱, 이종윤, 조성민, 이채령, 박해령				
불참위원	홍정화, 김화영	기타참석	기획처 직원 민혜정		
안건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2. 학위취득유예자의 학위취득유예비용(안) 심의				
회의 내용	<p>위원장(정사언)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과 학위취득유예자의 학위취득유예비용(안) 심의를 위한 회의입니다. 본회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예산회계 규정 등 관련 법규와 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정수 9명 중 7명이 참석하셨고, 교직원 3인, 학생 대표 3인, 외부 전문가 1인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의안인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위원장(정사언)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된 관련근거,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등 등록금 책정(안) 및 대학의 현황 등을 설명하다.]</p> <p>위원장(정사언) 배부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이종윤): 계열에 따라 인상률이 상이합니다. 산정 기준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 인상은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p> <p>기획처(민혜정): 인문사회 등록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상률이 다소 높게 책정하고, 현재 등록금이 높은 공학, 자연과학 등 계열은 상승률을 조금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같은 이유로 인문사회보다는 높고, 공학 및 자연과학 등 계열보다는 낮게 책정했습니다.</p> <p>위원(조성민):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결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등록금의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과중된다고 생각합니다.</p> <p>위원(홍사욱): 많은 학교들이 10여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p>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많은 대학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황으로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안대학교 역시 더 이상 동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박해령): 등록금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학생들에게도 편익을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참석위원) [참고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다.]

위원장(정사언)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거수하여 찬성하다.

위원장(정사언):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원안대로 일반과정 및 산업체위탁의 원문사회 계열은 5% 인상, 인문사회 중 미디어스토리텔링학과와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은 2% 인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금 인상은 3%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위취득유예자의 학위취득유예비용(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정사언) [학위취득유예자 용어의 정의 및 학위취득유예자 관련 근거, 학위취득유예자 유예비용(안)을 설명하다.]

위원장(정사언) 본교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금) 제2항에서 "수강하지 않는 학위취득유예자의 유예비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강하지 않는 학위취득유예자의 유예비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채령): 수강하지 않는 학위취득유예자의 유예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홍사욱): 수강하지 않는 학위취득유예자의 유예비용은 0원으로 하여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위원장(정사언)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별도의 학위취득유예비용을 부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참석위원) [참고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다]

위원장(정사언)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거수하여 찬성하다.

위원장(정사언):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위취득유예자의 학위 취득유예비용(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폐회시간 11시 45분)

- | | |
|----|----------------------------|
| 의결 |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의결 |
| 사항 | 2. 학위취득유예자의 학위취득유예비용(안) 의결 |

이상으로 본 의안이 처리되었으므로 상기 의사 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25년 1월 22일

- | | |
|-----|----------|
| 위원장 | 정사언 (인) |
| 위원 | 배장은 (인) |
| 위원 | 홍정화 (불참) |
| 위원 | 홍사욱 (인) |
| 위원 | 이종윤 (인) |
| 위원 | 조성민 (인) |
| 위원 | 이채령 (인) |
| 위원 | 박해령 (인) |
| 위원 | 김화영 (불참) |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장안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장안대학교 총장 귀하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left margin, including a large 'J' and various scribbles.

Handwritten notes in the right margin, including the date '10.15.22' and '11.01.2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25년 1월 22일

안건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2. 학위취득유예자 유예비용(안) 심의

1.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 제10항, 제11항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에 의거,

[붙임1]“202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4-450호(2024. 12. 31.))”

□ 내용

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3.66%)×1.5배=5.49% 이하

나. [노후시설 장비 수리비용]의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및 인건비용 등]의 비용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
다. [붙임2]<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따른 등록금액 변동표>,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따른 연간 예상수입(추정)> 참고

□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인상 - [붙임 3] 참고 >

(단위: 원)

학위과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인상률	비고
	계열				
일반과정, 산업체위탁	인문사회	2,869,000	3,012,000	5%	학기당 143,000 증가
	인문사회(미디어스토리텔링)	3,404,000	3,472,000	2%	학기당 68,000 증가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3,404,000	3,472,000	2%	학기당 68,000 증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3,039,000	3,130,000	3%	학기당 91,000 증가

- 등록금 인상(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정원외 포함),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 입학금 폐지에 따른 필요경비(255,000원)는 입학생 등록금에 별도 산입(근거: [붙임4]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578(2022. 12. 20.))

→ 추정재학인원으로 예상수입 산출 시 등록금 동결 대비하여 약 5.45억 증가

2. 학위취득유예자 유예비용(안) 심의

□ 관련근거

- 가. 장안대학교 학칙 제51조의1(학위취득유예)(신설 2024. 2. 29.) 제5항
- 나.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학위취득유예자 유예비용(안)

- 학위취득유예자의 유예비용: 부과하지 않음(0원)

□ 기타(용어의 정의)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202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202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 (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66%) × 1.5배 = 5.49% 이하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구분	2022년(a_1)	2023년(a_2)	2024년(a_3)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5.1%	3.6%	2.3%	3.66%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 ^{주1)}	기하평균(=r) ^{주2)}
주1) 2023년 1~11월 대비 2024년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주2)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r = \sqrt[3]{\left(1 + \frac{a_1}{100}\right) \cdot \left(1 + \frac{a_2}{100}\right) \cdot \left(1 + \frac{a_3}{100}\right)} - 1 \times 100 = (\sqrt[3]{1.051 \times 1.036 \times 1.023} - 1) \times 100 = 3.66\% \text{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2025학년도 평균등록금 산출방식

■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산출함

※ 학부 평균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대학원 평균등록금 = [전체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 × 2

■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2025학년도*에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단, 학부(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의거,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름

** 계열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계열별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평균등록금 인상률로 산정

【 등록금 인상률 산정 산식 】

$$\frac{\text{'25학년도 평균등록금} - \text{'24학년도 평균등록금}}{\text{'24학년도 평균등록금}} \times 100 (\%)$$

- 대학원의 경우 평균입학금과 평균등록금(수업료) 인상률을 각각 산정
-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대학은 전공자율선택 입학 유형의 학과별·학년별 등록금* 및 입학정원 포함하여 평균등록금 인상률 산정
 - 단, 전공자율선택 입학 유형은 계열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 * 전공자율선택 입학 유형 등록금 인상여부 판단 기준은 「2025년 등록금 통계조사 지침」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25.3월)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대학은 해당 편제완성연도까지 입학정원 증원분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계열별 인상률도 동일)
-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전문대학은 해당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과정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계열별 인상률도 동일)
 - 단, 신설된 전문기술석사과정별 평균등록금은 편제완성연도까지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단, 필수 등록학기를 연 3학기 이상 운영하고 수업연한이 단축(1년, 학칙 규정 필수)되는 학부과정에 한하여, 단축한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학과별·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정

【 다학기제·유연학기제 학과(과정)의 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식 】

$$\text{학과별·학년별 연간 납부등록금 총액} \times \frac{\text{기존 수업연한} - \text{단축 수업연한}^*}{\text{기존 수업연한}}$$

* 단축 수업연한(사례) : 12개월 미만 단축 → 0년

-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

※ 사이버대학이라 하더라도 연간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책정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

2025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현황

- (국가장학금) 청년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하여 4,774억원 증액
 -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9구간 대상 (약 50만명 추정)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원 지원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정부안)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추가)
I 유형		570			420			350		100
다자녀	첫째,둘째	570			48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200

✓ 국가장학금 지원 : (24년) 4조 975억원 → (25년) 4조 4,853억원

- (근로장학금)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 인원 확대하여 1,583억원 증액
 - 근로장학금 지원 14만명(24년)에서 20만명(25년)으로 6만명 확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4년) 4,691억원 → (25년) 6,274억원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본가와 분리해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344억 규모)
 -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임대차 계약) 지원 수혜자는 제외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신설) : (25년) 344억원

[붙임 2]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따른 등록금액 변동표

(100원 단위 절사, 단위: 원)

구분	동결	1%인상		2%인상		3%인상		4%인상		5%인상	
	연간 등록금	등록금	인상금액	등록금	인상금액	등록금	인상금액	등록금	인상금액	등록금	인상금액
일반과정											
인문사회	2,869,000	2,897,000	28,000	2,926,000	57,000	2,955,000	86,000	2,983,000	114,000	3,012,000	143,000
인문사회(미디어스토리텔링)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공학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자연과학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예체능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일반과정(3년제)											
인문사회	2,869,000	2,897,000	28,000	2,926,000	57,000	2,955,000	86,000	2,983,000	114,000	3,012,000	143,000
공학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자연과학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학사학위전공심화											
인문사회	3,039,000	3,069,000	30,000	3,099,000	60,000	3,130,000	91,000	3,160,000	121,000	3,190,000	151,000
자연과학	3,039,000	3,069,000	30,000	3,099,000	60,000	3,130,000	91,000	3,160,000	121,000	3,190,000	151,000
예체능	3,039,000	3,069,000	30,000	3,099,000	60,000	3,130,000	91,000	3,160,000	121,000	3,190,000	151,000
산업체위탁교육											
인문사회	2,869,000	2,897,000	28,000	2,926,000	57,000	2,955,000	86,000	2,983,000	114,000	3,012,000	143,000
예체능	3,404,000	3,438,000	34,000	3,472,000	68,000	3,506,000	102,000	3,540,000	136,000	3,574,000	170,000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따른 연간예상수입(추정)

(2024.4.1. 기준 추정재학인원, 단위: 원)

구분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연간예상수입액					
	동결	1% 인상	2% 인상	3% 인상	4% 인상	5% 인상
일반과정	12,187,422,000	12,307,910,000	12,430,292,000	12,552,674,000	12,673,162,000	12,795,544,000
일반과정(3년제)	3,191,858,000	3,223,554,000	3,255,532,000	3,287,510,000	3,319,206,000	3,351,184,000
학사학위전공심화	692,892,000	699,732,000	706,572,000	713,640,000	720,480,000	727,320,000
산업체위탁교육	1,061,342,000	1,071,750,000	1,082,452,000	1,093,154,000	1,103,562,000	1,114,264,000
(예상)수입 합계	17,133,514,000	17,302,946,000	17,474,848,000	17,646,978,000	17,816,410,000	17,988,312,000
기존(동결) 대비 (예상)수입증가액	-	169,432,000	341,334,000	513,464,000	682,896,000	854,798,000

>> 1% 증가 시 약 1.7억씩 수입 증가

[붙임3]

등록금인상(안) 상세

구분	표준분류	학과명	입학학기 등록금	입학학기 이후 등록금
일반과정	인문사회	경영계열	3,267,000	3,012,000
		경영과-비즈니스창업전공		
		경영과-온라인마케팅전공		
		관광레저경영과		
		군사과		
		글로벌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영어과		
		글로벌자율계열		
		글로벌케어복지과		
		디지털비즈니스중국어과		
		복지행정법률과-경찰법률전공		
		복지행정법률과-복지행정전공		
		상담재활복지과		
		세무회계과		
		유통경영과		
		일본어콘텐츠과		
		자유전공		
		자율융합계열		
		프랜차이즈경영과		
		항공관광과		
호텔경영과				
인문사회 (미디어스토리텔링)	미디어스토리텔링과	3,727,000	3,472,000	
	공학			
자연과학	IT융합과			
	바이오동물보건과			
	스포츠재활과			
	푸드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카페베이커리전공			
호텔외식조리과-호텔조리전공				
예체능	뷰티케어과			
	생활스포츠(족구)과			
	생활스포츠과			
	스타일리스트과			
	시각콘텐츠과-시각디자인전공			
	시각콘텐츠과-웹툰애니메이션전공			
	실용-스트리트댄스과			
	실용음악과			
	패션디자인과			
패션주얼리디자인과				

[붙임3]

등록금인상(안) 상세

구분	표준분류	학과명	입학학기 등록금	입학학기 이후 등록금
일반과정 (3년제)	인문사회	사회복지과(2년제) / (3년제)	3,267,000	3,012,000
		유아교육과(3년제)		
	공학	게임콘텐츠과(3년제)	3,727,000	3,472,000
		영상미디어콘텐츠과(3년제)		
		컴퓨터공학과(3년제)		
	자연과학	바이오보건환경과(3년제)		
식품영양학과(3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	인문사회	관광경영학과	3,385,000	3,130,000
		글로벌경영과		
		디지털비즈니스일본어학과		
		유아교육과(1년제)		
		유통경영학과		
		일본어콘텐츠과		
		일본어콘텐츠학과		
		프랜차이즈경영학과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1년제)		
		외식산업학과		
	예체능	생활스포츠과		
		생활체육학과		
산업체위탁 교육	인문사회	글로벌케어복지과	3,267,000	3,012,000
		복지행정법률과-경찰법률전공		
		복지행정법률과-복지행정전공		
		사회복지과		
		상담재활복지과		
	일본어콘텐츠과			
예체능	뷰티케어과	3,472,000	3,472,000	

* 입학금 폐지에 따른 필요경비(255,000원) 입학생 등록금에 산입한다.

-근거: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578(2022. 12. 20.)

* 등록금인상(안)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교 육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재안내

1. 관 련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나. 입학금 폐지 합의(사립대학총장협의회-학생-교육부, '17.11.), 전문대 입학금 폐지 합의(전문대교협-교육부, '18.1.), 사이버대학 입학금 폐지 관련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알림(교육부 이러닝과-4397, '19.12.5.)

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안내(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5823, '21.12.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입학금 폐지 합의 및 대학별 단계적 입학금 감축계획 등에 따라 학부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등록금 산입 합의사항 이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폐지대학의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 기준 >

구분	입학금 폐지연도 (= 산입연도)	산입금액	산입대상
4년제 ('17년 입학금이 평균 이상)	'23학년도	'17년 입학금의 20%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의 등록금에 산입
전문대	'23학년도	'17년 입학금의 33%	
사이버대	'23학년도	'19년 입학금의 33%	

※ 입학금 실비용분은 입학금 폐지연도에 한해 산입 가능(차년도 이후 산입 시 미인정)

((예시) '22년 입학금 폐지대학 중 '22년 입학금 실비용분 미산입 대학은 '23년 산입 시 미인정)

※ '17년 입학금이 평균 미만인 4년제 대학의 입학금 폐지연도(=산입연도) : '22학년도

※ '17년 입학금이 평균 이상이나 '21학년도 이전에 입학금 감축 이행을 완료한 대학(감리교신학대, 국민대, 극동대, 칼빈대, 협성대 이상 5개교)은 '22학년도 또는 '23학년도에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

※ 등록금 인상률은 입학금 폐지 연도에 한하여 산입금액을 제외하고 산정('23년 산정방법은 '22년 12월말 공고 예정)

3.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실비용을 산입한 등록금과 입학금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을 각각 전년도 등록금과 비교한 변동 여부를 명시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입학금 실비용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학년도 기 산입 대학 포함

** II 유형 지원 시 입학금 실비용분 산입금액에 대한 증빙 필요(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5.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3학년도부터 학부 입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민간전문가 고필현 행정사무관 황규태 대학재정장학 2022.12.20.
과장 노진영

협조자

시행 대학재정장학과-5578 (2022. 12. 20.) 접수 7524. (2022. 12. 20.)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번호 044-203-6223 팩스번호 044-203-6941 / gocci@korea.kr / 공개